

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번호	560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 13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- 호적법제132조 내지 제13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호적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제반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는 조례로서 존치 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함

2. 주요골자

- 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
 - 호적법 제132조의2 (과태료의 부과·징수)
 -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(과태료의 부과)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

고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